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1977. 3. 30.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업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사
3.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공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사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제4조 제1항 제5호중 “법 제4조 제2항”다음에 “또는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삽입 한다.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 (해외건설업의 면허 등)

- ①건설부장관은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면허의 종류와 신청기간등을 정하여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자의 과당경쟁의 방지와 해외공사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건설시장의 전망과 해외공사의 수주현황 등을 감안하여 신규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제한할수 있다.
- ③해외건설업자가 면허받은 영업의 종류 이외에 다른 영업에 대하여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할수 있다.
- ④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해외건설업의 면허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허신청자의 회사형태·자본능력(기업공개 여부)·기술능력·국내공사도급한도액·공사실적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중 “법 제4조 제4항을 “법 제4조 제5항”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해외건설업의 면허기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면허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주업무를 담당하는자에 대한 해외건설업의 면허의 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의 하한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해외공사수주업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자)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무역거래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종합무역상사 또는 기계공업진흥법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산업기계공업자로서 상공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의 제목 “(도급허가신청서)”를 “(도급허가신청서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②해외공사수주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외공사의 도급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하도급 받고자 하는 자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해외공사수주업등의 특례)해외공사 수주업과 건설용역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건설부장관은 건설업법에서 정한 공사 이외의 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그 소속공무원이 조사 업무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를 제36조로 하고 제26조 내지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6조 (협의 등)①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외건설업의 면허 및 그 취소
2. 해외공사의 도급허가 및 그 취소
3. 해외건설업의 영업정지
4. 해외건설업의 면허 기준 결정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결정을 한때에는 이를 관계 주무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해외건설협회의 업무) 해외건설협회(이하“협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의3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의 품의 보전 및 자율적 조정
2.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분석과 활용
3. 해외건설업에 관련된 제도의 인구 및 개선 건의와 자문
4. 해외건설관계인사 및 유관기관의 유대 강화
5. 해외건설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지사업
6. 해외건설의 홍보활동 및 간행물 발간

- 7. 해외건설공사용 기자재의 공동구입 및 용자·차관과 보증의 알선
- 8.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28조 (정관 기재사항) 법 제2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자산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제29조 (등기사항) 법 제2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일
5. 회비 및 그 납부방법
6.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제30조 (임원의 수 및 선임방법) ①협회에 회장 1인, 부회장 2인 (그중 1인은 상근)을 포함한 이사 12인과 감사 2인을 둔다.

- ②회장은 비회원중에서 선임한다.
- ③상근하는 부회장은 비회원중에서, 상근하지 아니하는 부회장은 회원인 이사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 ④회장과 상근하는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 ⑤감사는 회원중에서 1인과 비회원중에서 1인을 총회가 선출한다.

제31조 (보고 등)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사항
 2. 회원의 제명 또는 자격정지
- ②협회는 법의 규정에 위배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외공사를 수주 또는 시공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건의와 자문) ①협회는 해외 건설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 ②협회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대하여 응답하여야 한다.

제33조 (회비)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 (총회) ①협회에 총회를 둔다.

- ②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③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3. 이사회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4. 이 영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35조 (이사회)

- ①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③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회원의 복리·포상 및 징계
 3. 정부에 대한 건의 및 자문
 4. 이 영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977년12월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I]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	
영업의 종류	영업의 내용
토목공사업	토목공사·포장공사·항만건설공사 및 그에 부수되는 공사와 용역
건축공사업	건축공사 및 그에 부수되는 공사와 용역
특수공사업	철강구조물설치공사·색도설치공사·조경공사·프란트설치공사와 토목공사·건축공사·전기공사·전기통신공사 이외의 공사 및 그에 부수되는 공사와 용역.
전기공사업	전기공사 및 그에 부수되는 공사와 용역
전기통신공사업	전기통신공사 및 그에 부수되는 공사와 용역
건설용역업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용역
해외공사수주업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공사와 용역의 수주 및 하도급(공사의 시공을 제외한다)

[별표 2]

해외건설업의 면허기준의 범위

구 분	기 술 능 력	자본금 또는 출자액
토목공사 업	토목분야 기술자격취득자 10인이상 20인 이내(기술사 또는 기사 1급 3인포함)	5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건축공사 업	건축분야 기술자격취득자 8인이상 16인이내(기술사 또는 기사 1급 2인 포함)와 토목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2인이상 4인이내(기술사 또는 기사 1급 1인 포함)	3억원 이상 6억원 이내
특수공사 업	토목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격취득 자 4인이상 8인이내(기술사 또는 기사 1급 1인포함)와 기계·국토 개발 기타 특수공사업과 관련되는 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6인이상 (기술사 또는 기사 1급 2인포함)	3억 5 천만원 이상 7 억원이 내

전기공사 업	전기분야 기술자격취득자 8인이상 16인 이내(기술사 또는 기사 1급 2인 포함)	1억원 이상 2억원 이내
전기통신 공사업	통신분야 기술자격취득자 8인이상 16인이내(기술사 또는 기사 1급 2인 포함)	1억원 이상 2억원 이내
건설용역 업	건축사 5인이상 10인이내(1급 1 인 포함)또는 해외건설업과 관련 되는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 1급 5인이상 10인이내	2천만 원이상 4천만 원이내
해외공사 수주업	해외건설업과 관련되는 분야의 기 술사 또는 기사 1급 8인이상 16 인 이내와 건축사 2인이상 4인이 내(법 제 6조 제 1항 제 2호에 규 정된 자는 위의 기준의 1/2 이상)	10억원 이상 20억원 이내

◎ 건설부고시 제 49호

건설부고시 제 197호(1975. 12. 15)로 고시한 바 있는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중 “별표 1” 설계감리보수 요율표에 “주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기 건축사법시행령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다.

1977년 3월 25일

건설부장관

“주 3” 새마을사업으로 부락민이 공동으로 건축하는 새마을회관(330m² 미만), 공동목욕장(165m² 미만)의 설계보수요율은 본 설계감리보수요율중 설계보수요율의 50%를 그 설계보수요율로 한다.

4월호회지“건축사”지 발행이 특집수록으로 늦어졌음을 알립니다
특집. 서울도시기본구조 연구세미나.